

설악산국립공원 일부제척 추진상황

■ 설악산 국립공원 존속 현황

0. 지 정 : 1970. 3. 24 (건설부 공고 제28호) 면적 : 194km²

0. 구역변경 : 1972. 10. 13 (건설부 공고 제77호) 면적 : 344km²

1978. 10. 4 (건설부 공고 제100호) 면적 : 354.6km²

※ 척산집단시설지구와 공원보호구역 10.6km²가 편입

1984. 12. 27 (건설부 공고 제557호) 면적 : 373km²

※ 공원보호구역 18.4km²가 편입 (도문, 노학동 지역)

0. 용도지구 :	· 자연보존지구	————	141.9km ²
	· 자연환경지구	————	218.8km ²
	· 농어촌 지구	————	8.031km ²
	· 집단시설지구	————	4.269km ²
	· 공원보호구역	————	4.7km ²
	계	————	373km ²

■ 추진상황

- 1989. 2. 척산지구 국립공원 해제요구 (청와대, 건설부)
- 1989. 12. 척산, 도문지구 국립공원 해제요구 (건설부)
- 1990. 4. 척산지구 국립공원 해제요구 (건설부)
- 1991. 1. 척산지구 국립공원 해제요구 (건설부)
- 1991. 8. 척산지구 국립공원 해제요구 (국립공원 관리공단)
- 1992. 1. 척산지구 국립공원 해제요구 (국립공원 관리공단)
- 1992. 1. 척산지구 국립공원 해제요구 (내무부)
- 1993. 1. 척산지구 국립공원 해제요구 (국 회)
- 1993. 1. 척산지구 국립공원 해제요구 (내무부)
- 1994. 12. 취락지구 변경신청 (내무부)

■ 향후 대책

- 자연공원법이 개정되면 공원법 취지에 부합되지 않게 지정된 공원지역중 자연의 보존가치가 없고 문화유적지도 없는 전, 답 및 기존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선별하여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하여 개발코져 합니다.

국립공원지역이 제척되면 국토이용계획을 도시지역으로 변경할 계획이며, 향후 도시계획구역에 편입시켜 적정 용도지역을 지정하여 도시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.